

營業秘密 保護制度的 運用事例 (2)

目 次

- I. 判決事例의 分析
- II. 營業秘密의 管理狀態
- III. 營業秘密의 범위와 職業選擇의 自由
- IV. 컴퓨터 프로그램과 秘密侵害
- V. 複製公法(reverse engineering)의 合法性
- VI. 不正目的의 使用
- VII. 契約과 信賴關係의 違反
- VIII. 營業秘密의 歸屬
- IX. 秘密管理 및 사용금지
- X. 不正 競爭에 의한 秘密侵害
- XI. 아이디어와 디자인의 保護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 및 다음 號〉

이 글은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부가 발간한 「營業秘密保護와 企業競營 戰略」의 내용중 일부를 소개하는 것임.

〈편집자 주〉

V. 複製工法(reverse engineering)의 合法性

① 사례 15 : 복제공법의 합법성 (Chicago Lock Co. v. Fanberg)

원고 Chicago사는 자물쇠 제조업자인데, Ace시리즈 자물쇠의 열쇠 암호 코드에 관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열쇠에 “Do not Duplicate”(복제금지)라는 표시를 하고, 다른사람에 팔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자물쇠의 등록업자에게 한정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 Fanberg 등은, 등록자로부터 열쇠를 취득,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하여 암호 코드를 푼 열쇠업자로부터 그 암호코드정보를 취득하여 業界紙에 게재 출판하였다. Chicago사는 Fanberg 등에 대해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사용을 이유로 금지신청을 청구하였다.

지방법원은 시카고사와 등록자, 등록자와 열쇠업자간에 비밀보호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시카고사와 열쇠업자간에 비밀보호 의무를 인정,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Fanberg 등은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이유를 제시하였다. “영업비밀은... 성실한 방법으로 발견하거나, 부주의한 공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않는다.” “시카고사의 등록업자에 대한 암묵적인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비밀보호의무를 인정하면, 공정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발견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캘리포니아주 재판소의 의견에 위반된다.

또한 등록업자와 열쇠업자간의 신뢰의무는 등록자가 열쇠업자 등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비밀보호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추구할 수 있을 뿐, 시카고사가 열쇠업자나 Fanberg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경우 이러한 의무를 인정하면, 영업비밀을 연

방법의 특허권으로 인정하여 주법상의 독점권으로 변질시키게 되므로 안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공소심은 시카고사와 열쇠업자간에 비밀보호의무를 부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Ⅶ. 不正目的의 使用

① 사례 16 : 비밀관리 및 부정 목적의 사용 (Jostens, Inc. v. National Computer System, Inc. et al.)

Jostens사의 종업원 Titus는 회사의 지시로 CAD/CAM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의 제조는 Adage사에게 위탁하였다.

Titus는 Jostens사를 퇴직한 후, National Computer사에 입사하여, 보다 우수한 CAD/CAM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Jostens사에 협력을 요청하였지만, Jostens사가 이것을 거부하자, Adage사에 개발을 위탁하였다. 새로운 시스템이 완성된후, National Computer사는 Balfour사에 이를 판매하였다. Jostens사는 영업비밀 침해를 들어 National Computer사에 대해 손해배상 및 금지를 청구하였다.

제1심 재판소는, Jostens사 시스템이 이미 잘 알려진 기술의 조합에 불과하고, 아울러 비밀관리도 불충분했다고 보고, 영업비밀로 인정치 않았다.

법원이 Jostens사의 비밀관리가 불충분했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Jostens사는 CAD/CAM 시스템에 관한 테잎과 문서에 비밀표시를 하지 않았다.
(2) 그 시스템에 종사하는 종업원 몇 사람은 비밀보호계약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 (3) Titus는 Jostens사의 허가를 얻어 시스템에 관해 학회에서 발표를 한 사실이 있다.

② 사례 17 : 前종업원의 부정목적의 사용 (Dynamics Research Corp. v. The Analytic Science Corp.)의 판례

Dynamics Research사는 1955년에 창립되

어, 1960년 경부터 국무성 등의 정부기관에게 고도의 기기, 시스템개발에 따르는 관련정보 및 여기에 기초한 어드바이스(TIRAS 의사결정 지원관리 시스템)를 해왔다. 피고 Bicknell씨는 미시간대학에서 공학학위를 취득한 후, 공군에서 미사일유도 시스템관리에 종사하다가, 그후 MIT연구실에서 선진적인 미사일관성유도 시스템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MIT에 재직중, 피고 Bicknell씨는 원고 Dynamics Research사의 서비스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1967년 10월 Dynamics Research사에 고용되어, TIRAS시스템을 판매한 후, TIRAS의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다. 1971년 피고 Bicknell씨는 TIRAS부문에 충분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월 사직하고 피고 Analytic Science사에 입사, SRAM(단거리 공격 미사일)에 대해 같은 종류의 서비스 (MIDAR)를 하고 있었다.

Dynamics Research사는 1972년 6월, TIRAS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 피고의 영업비밀의 부정행위에 관련하여, 고객과의 접촉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977년 2월 원심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항소하였지만, 항소심도 기각되었다.

법원의 판결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계약이 끝난 종업원은 그 고용기간중에 얻은 일반적인 기능과 지식(general skill or knowledge)을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식, 경험, 기억, 기능을 前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노동유동성, 직업활동의 자유, 독점의 방지를 촉진시킨다. 법은 이러한 기능과 지식의 국가적인 축적의 증가를 지향한다.

Bicknell씨는 Dynamics Research사에서 업무범위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제품을 본적도 없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비밀’을 분명하게 이증할 책임이 있다. 종업원의 일반적인 지식이나 경험의 일부로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계약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사용자의 이익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본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다.

Bicknell와 Dynamics Research사간에는, 고용계약시 비밀유지계약을 하였으나, '비밀'에 상당하는 것은 보호되지만,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종업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비밀유지계약은 공공질서에 위반된다.

③ 사례 18 : 종업원의 轉職과 부정 목적의 사용(아이, 쉬 에스사건)

원고 X는 로봇트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벨기에 법인인 A사로부터 정밀제조사용 로봇트의 기술협을 체결하였다. X사의 종업원 Y1은 재직중에 기업 Y2의 설립에 참여하였다. (Y1은 X사에 비밀보호계약을 작성하고 기술협정계약 종료후 5년동안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한바 있다) Y1은 X사의 하청기업 Y3로 하여금 Y2와 로봇트 판매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Y3로부터 기술을 포함한 도면, 로봇트 취급설명서를 교부받았다.

기업Y2는 종업원 Y1이 원고X 사이에 비밀보호의무를 체결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종업원 Y1을 Y2의 이사에 취임시켜 A사와 협정한 기술을 누설토록 권유했으며, 또한 Y1으로 하여금 X사의 하청기업인 Y3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면 및 로봇트 취급설명서를 가져오게 하였다. Y2는 Y3로부터 납입된 로봇트에 Y1으로부터 알게된 기술에 기초하여 제작한 부품을 이용, 정밀구조용 로봇트를 판매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④ 사례 19 : 계약교섭과 부정의 목적 (체스트론 사건)

전자통신기, 전자응용 기기 등의 제조판매를 하는 원고가 스피론이라는 전자악기를 개

발, 75년에 완성품을 만들었는데, 이중 일부 부품을 악기제조판매 회사인 피고에게 발주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스피론의 독점적 판매위탁 계약을 신청하고, 원고도 합의한 스피론을 5대 인도하였다. 다시 피고는 특허권의 매입을 요구하던 중, 스피론을 반품하고, 판매위탁계약의 해제도 통고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개발 담당의 종업원을 스카우트하여, 스피론의 모조품 체스타론의 개발을 맡겼으며, 그 후 77년 7월, 이를 제작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와 스피론에 관한 판매위임계약체결 교섭중에, 스피론의 모조품 체스타론의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계약체결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이를 즉각 통고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체결을 기대하고 스피론의 본격적인 판매를 늦추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원고로부터 구입한 스피론을 분해하여 모조품 체타론을 비밀리에 제작하였다. 체스타론의 완성에 이르자 비로소 원고에 대해 계약체결의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그 후 직접 체스타론의 선전 판매를 대대적으로 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피고 행위는 원고를 기만하고, 원고의 선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등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을 고의로 침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VII. 契約과 信賴關係의 違反

① 사례 20 : 신뢰관계 (Anaconda Company v. Metric Tool and Die Company)

원고 Anaconda사는 전화 코드 외장의 제조기계설계에 관해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직무상의 필요에 의해 기계조작, 보수, 개조를 담당하는 종업원에게는 이를 공개하였다.

그런데 피고 Metric사는 Anaconda사의

종업원 Ames와 Van Meter를 스카웃하여, 원고측의 영업비밀을 이용, Anaconda사와 유사한 전화 코드의 외장을 제조 판매하였다. Anaconda사는 Metric사에 대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금지신청은 인정하였으나, 손해 배상은 권리행사의 태만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법원은 Ames사와 Van Meter의 비밀보호 의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종업원은 고용계약을 마칠때 고용기간 중에 획득한 경험, 지식, 기억, 기술을 가지고 있을 권리는 있지만,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비밀 공정에 대해 지식을 공개할 권리는 없다”(고용자가 개발하여) 이미 존재하는 영업비밀, 종업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종업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공개하는 경우는) 종업원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비록 명시적이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묵시적인 비밀보호 의무가 발생한다. Ames와 Van Meter는 영업비밀인 기계의 개발에 애초부터 관여하지도 않았고, Anaconda사가 Ames와 Van Meter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한 것도 명백히 직무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묵시적인 비밀보호 의무가 발생하였다.

Metric사의 부정사용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첫째, Ames와 Van Meter의 정보 공개가 Anaconda사의 비밀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문제에 관해 Metric사의 대표자 H는 그 기계가 영업비밀이란 것, Ames와 Van Meter의 지식이 Anaconda사의 고용으로부터 생겼다는 점, Ames가 Anaconda사의 설계도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Ames와 Van Meter가 공개한 것이 종업원이 계약종료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식 혹은 경험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 아울러 Ames와 Van Meter가 前사용자인 Anaconda사의 비밀공정을 공개하는 것이 고용관계의 신뢰관계에 위반된다는 사실

을, Hussian은 그의 지위로 미루어볼때,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했다.

둘째, 피고 Metric사는 의도적으로 Ames와 Van Meter에게 그 영업비밀의 공개를 요구했다고 인정된다. Metric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 기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위에서 관련분야의 제조자를 찾지 않고, Anaconda사의 종업원이나 前종업원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만일 Ames와 Van Meter로부터 일반적인 지식만 얻을 수 있었다면, 모집대상지역을 그렇게 좁게 한정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Metric사의 행동은 ‘의도적’이었음이 인정된다.

② 사례 21 : 계약위반의 권유 (Republic Gear Co. v. Borg-Warner Corp.)

원고 Republic Gear 사는 1955년 7월 5일 브라질의 주식회사 Manquinas York와 15년 동안 브라질 국내에서 Republic의 기어를 제조판매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Republic은 York에 Republic의 이름으로 기어를 판매하고, Republic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Republic은 브라질 국내에서는 다른 제조회사에 라이선스를 주지 않고, York에게 기어의 제조 및 품질의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약속하였다. York는 Republic의 품질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York는 나아가 브라질에서 판매하는 Republic의 기어 판매에 대해 5%의 로얄티와 달마다 최소 로얄티를 지불하기로 하고 이를 브라질은행의 Republic구좌에 넣기로 약속하였다. Republic은 계약해제권이 있지만, York는 해제권이 없었다.

이후 Republic은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York는 Republic의 이름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York는 Republic이 제시한 로얄티 전액을 즉시 제공하지는 않았다. 1958년 12월과 1959년 10월 양자간부가 참여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1959년 12월 York는 1959년 10월 30일부터 Republic의 상표를 붙여 기어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고, 라이선스 계약은

1959년 9월 30일부터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편지를 Republic에 보냈다.

한편 1959년 12월 1일 이전부터 York와 Borg-Warner 사이에 변속기와 기어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이 비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York는 브라질에 Industria Automobilista Borton, S. A를 설립하고, 그 간부를 선출하였다. Borg-Warner와 이 회사는 Borton과 서면관계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Borg-Warner는 Borton에게 Warner기어를 제조하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였다. Borton은 초기지불 및 판매수량에 비례하는 로얄티를 지불할 것을 체결하였다. 나머지 조건은 Republic과 York 사이에 맺은 계약과 유사하였다.

Borg-Warner와 York사이에는 1955년, 1959년에 계약의 교섭이 이루어졌다. York는 기어외에도 변속기에도 관심이 있었다. Borg-Warner는 1955년 Republic과 York사이에 15년의 계약이 있음이 알고 있었다. Republic은 Borg-Warner에 대해 계약위반을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합중국 지방재판소는 원고의 청구를 허용하고, 피고는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브라질회사에 노우하우의 라이선스를 체결한 미국회사가 다른 미국회사를 피고로 하여, 라이선스체결중에 별도의 라이선스를 체결제한 불법행위에 관한 사건이다. 원고와 브라질회사간의 노우하우계약의 해석 및 효력에 대해서는 브라질법이 적용되지만,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축법원칙에 따라 일리노이주법이 적용되었다. 이 사건은 주재판소가 관할권이 있지만, 당사자가 주를 달리하는 소송이므로, 연방재판소에 제기되어, 연방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경쟁행위이며, '원고와 York간에 체결된 계약을 해칠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법 제768조(2)항에 따

라, 다른 사람간에 체결된 계약을 파기시킬 특권은 누구에게도 없으며, 위법의도의 여부가 필요조건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결과를 초래케할 목적의 존재라고 판결하였다.

③ 사례 22 : 신뢰관계(1) (Wexler et al. v. Greenberg et al.)

원고 Wexler씨가 사장인 Buckingham Wax Company는 위생설비나 위생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Greenberg씨는 대학 졸업후 다른 회사를 거쳐 Buckingham 회사에 입사하여, 8년동안 주임과학자로 근무하면서 위생설비, 위생유지에 관한 타사 제품의 분석, 신제품의 개발, 재료발주교섭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이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입 판매하고 있는 위생설비 약품전문 판매업자인 Brite Products Co. Inc.(공동피고)에 스카웃되어, 이 회사에서 설비 구입이나 제품개발을 담당하면서 Buckingham사와 같은 상표로 판매하였다. 원심은 피고 Brite사가 사용하는 정보가 피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Buckingham사가 개발한 영업비밀을 적용한 데 불과하므로, Greenberg씨는 고용계약 등에 기초한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 사용자 Wexler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영업비밀이고, 전종업원 Greenberg간에 비밀 보호 규정이나 신뢰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것 등, 이 두가지 모두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양자간에 특별한 비밀보호계약이 없었으므로, 신뢰관계의 유무가 쟁점이 되는데, (1)사용자가 종업원에게 기존에 있던 영업비밀을 알려준 것, (2)고용관계의 성질로부터 비밀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정보는 기존의 것이 아니므로 (1)의 사례는 아니다.) (2)의 경우도,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권리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종업원 개인의 권리가 대립되고 있지만, 개인의 권리 옹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영미법의 법논리이다. 가령 명시적인 계약으로 비밀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계약의 합리성을 사용자의 보호의 필요성과 종업원의 부담정도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한다.

Greenberg는 Buckingham사 재직중에 연구와 실험을 하고 제법의 개발과 발명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본건의 제법은 Greenberg가 경쟁자의 제법을 일상업무중에서, 단순히 변경한 결과에 불과했다. 즉 본건의 제법은 Buckingham사로부터 원조나 연구비를 받지 않은 과학으로서의 그 자신의 기술의 성과이다. 그리고 Buckingham사도 이 기술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Greenberg에게 기대를 보인 증거도 없다. 따라서 Greenberg는 본건 제법을 사용, 공개해도 신뢰관계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건 제법은 Buckingham사에서 업무에 의해 Greenberg 자신이 획득한 기술 기능의 일부이고, 사용의 제한을 받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사례 23 : 신뢰관계(2) (By-Buk Company v. Printed Cellophane Tape Company)

퇴역군인 Black씨는 金型工으로서의 훈련을 받기 위해 By-Buk사에 취업하였다. Black씨는 마스크 등을 제조하는 기계의 조립, 운전에 종사하였다. By-Buk사와 Black 사이에는 명시적인 비밀보호계약은 없었지만 By-Buk사는 마스크 등의 제법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않된다는 취지의 말을 Black씨에게 여러번 이야기한 적은 있다. 그리고 By-Buk사는 평소에도 마스크의 제법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Black씨는 By-Buk사를 퇴직한 후 Printed Cellophane Tape사에 입사하여 마스크 등의 제법을 이 회사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Printed Cellophane Tape사는 By-Buk사 제품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를 제조, 판매하였다.

By-Buk사는 Printed Cellophane Tape사에 대해 영업비밀의 침해를 이유로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제1심, 제2심 모두 By-Buk사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신뢰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종업원은 고용에 의해 취득한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또는 이용해서는 않된다는 묵시적인 의무가 있다. (2)이러한 정보는 사용자의 재산이고, 종업원은 그 신뢰하에서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고, 신뢰에 반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다. (3)명시적인 비밀보호계약은, 구체를 하는데 반드시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개별 사례의 상황 및 사용자 종업원 양자간의 관계에서 비밀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이 사건에도 이러한 의무가 고용계약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사례 24 : 경쟁 금지계약의 유효성(原田商店사건)

원고X(原田 상점)은 廣島 백화점 내에 있는 부인 복지의 판매점이다. 여점원 피고Y를 고용할 때, 퇴직후에도 백화점내의 부인 복지를 파는 다른 상점에는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Y는 X로부터 해고되자, 이를 어기고 다른 상점에 재취업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부인복지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제1심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공소하였다.

“피고 Y는 특별한 지식이나 기능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인 양복지 판매를 보조”하면서 “해고되면 쉽게 취직할 수 없는 생활 곤란한 가장 약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약자에 대해 취직의 제한을 약속하는 것은 “피용자의 생활권을 위협하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우려가 충분하므로, 고용주의 이익을 보호 (59p에 계속)

2. 산업재산권 내용 수록

공보는 산업재산권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공보를 입수하여 정보자료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보자료로써 이용가치를 한층 높여야 할때라 강조하고자 한다.

3. 특허정보 및 선행기술의 보고

공보는 일반 기술정보와는 달리 기술내용을 나타내는 기술정보로 활용될뿐만 아니라 독점배타권의 내용을 나타내는 권리 정보로서의 양면성이 있다. 따라서 그속에 포함된 선행기술을 통하여 기술개발 및 연구, 생산설비의 중복투자방지, 특허분쟁의 사전예방 등 다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전 산업분야를 총망라하고 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정된 분야의 기술을 수록하고 있는 기술정보 보다 포괄적인 기술정보 자료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4. 발명인과 기업의 필수 정보자료

개인 발명가는 물론 기업에서 공보의 필요성을 필자 나름대로 열거해 보고자 한다.

- 각기술 분야의 발전동향 파악.
- 장기적 연구개발 목표의 설정.
- 선행기술의 조사 및 파악.
- 연구 및 생산설비에 대한 중복투자방지.
- 국내외 타사와의 기술제휴에 앞서서 중요한 검토자료로 이용.

5. 공보의 구독 방법

모든 공보는 구독신청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으므로 구독 희망자는 한국발명특허협회 공보보급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557-1077.8)로 문의 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산권(특허)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께서는 효율적인 특허관리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공보를 구독하시어 국제경쟁력에서는 물론 신기술 개발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여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 되시기를 바란다.

〈♣〉

(35p에서 계속)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미풍양속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⑥ 사례 25 : 기술 제공 계약 (리버 카운터)

원고는 리버 카운터(수력으로 배를 이용한 식료품 운반 시스템)의 제조기술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시공하는 회사이다. 1978년 12월 원고는 피고사이의 다음과 같은 기술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첫째, 원고는 피고에게 리버 카운터의 제조기술(이하 본건의 제조기술로 약칭)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시공한다. 둘째, 피고는 그 대가로 100만엔을 지급한다. 셋째, 피고는 원고의 승인하에 피고의 점포에서만 본건의 제조기술에 기초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계약에 기초하여 제조기술을 제공하고 본건 시공을 완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79년 7월경 점포를 신설하고, 원고의 허락 없이 본건 제조기술을 사용하고, 제3자에 시설을 시공토록 하였다(총 4개 점포). 원고는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본건 계약의 시설 사용한정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